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442 발의연월일: 2021. 1. 18.

발 의 자 : 홍석준 · 추경호 · 정희용

강대식 · 김성원 · 김기현

송언석 · 김승수 · 김태호

이철규・윤재옥・곽상도

김예지 · 김정재 · 조수진

양금희 • 박대수 의원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확산으로 외국인근로자는 취업활동 기간 만료에도 출국을 못하거나 재입국을 희망해도 입국금지로 제한을 받고, 입국 후에도 자 가격리 시설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해외입국자 가운데 확진자가 발생하는 만큼 입국자에 대한 방역이 강화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외국인력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로 인해 산업현장의 인력수급 애로가 심화되는 상황임.

현행법은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고,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 허가를 요청한 근로자의 경우 2년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 음.

하지만,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출·입국이 제한되는 상황에 대한 예외적인 규정이 부재한 상황임. 이에 감염병 확산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출·입국이 어려운 경우 한시적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2항 신설).

법률 제 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재고용 허가 요청 절차"를 "재고용 허가 요청 절차, 제2항에 따른 취업활동 기간 연장"으로 한다. ②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출·입국이 어려운 경우 제1항 및 제18조에도 불구하고 1년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활동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다.

제2조(취업활동 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전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으로 출·입국이 어려운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의2(취업활동 기간 제한에	제18조의2(취업활동 기간 제한에
관한 특례) ① (생 략)	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u> <신 설></u>	②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으
	로 외국인근로자의 출・입국이
	어려운 경우 제1항 및 제18조
	에도 불구하고 1년 미만의 범위
	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받을
	<u>수 있다</u> .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자의 <u>재고</u>	③재고용
용 허가 요청 절차 및 그 밖에	허가 요청 절차,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	취업활동 기간 연장
로 정한다.	